



현행 스포츠윤리교육 문제에 대한 고찰*

A Study on How to Improve Current Ethics Education in Sports

전상완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이은석 가천대학교 교수 · 이경숙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박한솔** 가천대학교 연구원

Jeon, Sang-Wan Gachon Univ. · Yi, Eun-Surk Gachon Univ. · Lee, Kyung-Sook Korea National Sport Univ. · Park, Hansol Gachon Univ.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스포츠윤리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포츠윤리 관련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3가지 프레임인 개인적 문제, 조직·집단적 문제, 사회·환경적 문제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적 문제는 ‘교육의 피로감’, ‘스포츠 현장 적용의 고충’, ‘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집단적 문제는 ‘교수자의 전문성 결여’, ‘교육 콘텐츠의 체계화 부족’, ‘특정 수단으로 활용’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환경적 문제는 ‘교육의 강제성’, ‘스포츠윤리의 개념적 혼용’,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행 스포츠윤리교육 문제의 개선방안은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성찰적 실천 교육’, ‘지식 및 교육과정 체계화’, ‘전공 교수자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나타났다.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를 교육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제도적 지원 아래, 이해 관계자 모두가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스포츠윤리교육, 개인적문제, 조직·집단적문제, 사회·환경적문제, 개선방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sports ethics education by examining the problems and causes of current sports ethics education and suggesting improvement plans. To this end, first, an open questionnaire and in-depth interview were conducted with 5 sports ethics related experts. The collected data was classified into three frames: personal problems, organizational/collective problems, and social/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blem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for the problems of sports ethics education, first, personal problems were ‘fatigue of education’, ‘difficulty in application to sports field’, and ‘absence of awareness of necessity of education’. Third, social/environmental problems appeared as ‘compulsoryness of education’, ‘conceptual mixed use of sports ethics’, and ‘lack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urth, current sports ethic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ducational problems were ‘customized, communication, and experiential education and reflective practice education’, ‘systematization of knowledge and curriculum’, ‘expansion of major instructors’, an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practically improve unethical problems in the sports world through education, all stakeholders can diagnose the reality and transform into effective education under the wil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ports ethics education and continuously improve. Active effort will be required.

Key words: Sports ethics education, Personal problems, Organizational/Collective problems, Social/Environmental problems, Improvement plans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A2A03054352)

** hansol0115@gachon.ac.kr

서론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로 전 국가대표 체조 대표팀 주치의 Larry Naser의 성범죄를 손꼽았다. Naser는 30년 가까이 팀 주치의로 활동하며 265명이 넘는 어린 선수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BBC, 2019.04.26.). 이 외에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Kamila Valieva의 도핑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2023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를 치렀던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회 기간에 일탈 행위가 논란이 되었다.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음주했다는 의혹이 전파되었고, 수위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의 소집 중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보도했다(김우중, 2023.05.31.).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성범죄, 도핑, 일탈 등 사건의 유형을 막론하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스포츠윤리적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자, 국외에서는 오랫동안 골칫덩어리였던 문제의 고리를 근절하기 위한 우선적 대안으로 스포츠윤리교육을 제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호주와 영국의 스포츠윤리교육(Sport Integrity Australia)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과 학교 교육 자료로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Sport Integrity Australia, 2023). 스포츠윤리교육이 다루는 윤리 교육 콘텐츠는, 반도핑을 비롯해 승부조작, 불법 약물, 윤리적 의사결정으로 구분되며 이들 교육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온라인, 대면 등을 활용해 교육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스위스는 스위스스포츠윤리(Swiss Sport Integrity)를 통해 스포츠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스포츠윤리는 “스위스 선수, 지원 인력 및 관계자가 예방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포츠에서 건강하고 존중하며, 공정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

였다(Swiss Sport Integrity, 2023). 구체적으로 깨끗한 스포츠와 반도핑을 주제로 운동선수, 코치, 의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면서 올림픽 이념 기반의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스포츠윤리를 고취시키고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 스포츠윤리교육과 관련하여 Szkiela (2021)는 스포츠윤리교육 정책에 대해 단순히 스포츠윤리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청렴하기 위해 도핑을 근절하기 위한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스포츠윤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스포츠윤리 문제를 기반으로 정책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의 무결성 및 부패를 이룩하는 데 모범 사례가 된다고 하였다(Hall, Masters & Ordway, 2021). 또한 Pavot & Faiss(2023)는 스위스스포츠윤리가 청렴한 스포츠의 권리와 반도핑 노력을 통해 절실한 스포츠윤리의 필요성을 자극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외의 스포츠윤리 교육을 통한 정책은 대체로 잘 반영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스포츠윤리교육은 2011년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사건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프로선수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정방지교육을 실시하면서(최유리, 2018), 스포츠윤리교육 시행의 계기가 되었다. 2011년부터 시행된 부정방지교육은 단순히 금지 규정과 처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쳤고, 기존 교육을 개선함으로써 윤리적 소양을 갖춘 스포츠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2017년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스포츠윤리교육은 2021년 2월 시행된 제2차 개정법에서 선수, 국가대표,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법정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국민체육진흥법, 2022).

지금까지 현장과 학계에서는 스포츠윤리 문제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지만(Arnold, 1997; Cleret, McNamee & Page, 2015; Constantin, 2019; Gardiner, 2018; Spencer, 1996; Tak, Sam & Choi, 2020),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비윤리적 문제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스포츠윤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가는 스포츠윤리교육 자체의 전문성과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다소 급격하게 실시됨에 따라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학문적 고찰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 스포츠윤리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에 대해 임다연과 임효성의 연구(2022b)에서 법정외무교육으로서 스포츠윤리 교육 자체의 학습자 피로감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고, 또 다른 연구(2022a)에서 비대면 교육에 대해 상호소통, 시스템, 참여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동혁과 정은, 류태호의 연구(2021)에서 교육 내용, 방법, 운영에 대한 비판을 하였고, 전상완, 김미숙, 박한술(2023)은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정서적 스포츠 폭력에 대해 탐구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스포츠윤리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 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을 제시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매우 미비한 수준에서 본 연구가 추동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장 및 학계 스포츠윤리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개방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개인적 문제, 조직·집단적 문제, 사회·환경적 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에 도움을 주고,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적 기초자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정보제공자

본 연구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문제와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가로 판단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5명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 정보제공자는 유목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통해 선정하였다. 유목적 표집방법은 연구문제에 적합한 상황에서 특성을 대표하는 대상자를 표집하는 방법으로써 연구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공자에게 심층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함이다(이민규, 원영신, 2013). 정보제공자들은 개방형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이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하였다. <표 1>은 정보제공자의 특성이다.

표 1. 정보제공자 특성

정보 제공자	학력	전공	재직	경력	교육 경험
A	박사	스포츠철학	대학교	12년	Y
B	박사	스포츠윤리	대학교	13년	Y
C	박사	스포츠철학 (전)공공기관		14년	Y
D	박사	스포츠윤리	유관기관	5년	Y
E	박사	스포츠철학	대학교	15년	Y

정보제공자는 첫째, 본 연구와 관련된 스포츠철학과 스포츠윤리 전공자로 한정 지었다. 둘째,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혹은 스포츠철학 및 윤리 전공으로 대학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로 설정하였다. 셋째, 스포츠윤리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도 교육하고 있는 교수자로 설정하였다.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개방형 질문지와 면담을 통해 확보하였다. 개방형 질문지는 e-mail을 통해 사전에 보냈고, 회신받았다. 개방형 질문 답변을 토대로 심층면담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2022년 12월 첫째 주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8주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을 참여하기 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연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면담내용을 전부 휴대전화 녹음기를

표 2. 질문 내용

수집 자료	질문문항	질문내용
개방형 설문	개인 정보	학력, 전공, 경력, 재직, 스포츠윤리교육 경험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와 원인	개인적 차원
		조직·집단적 차원
		지역사회·국가적 차원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개인적 차원	
	조직·집단적 차원	
	지역사회·국가적 차원	
	스포츠윤리의 개념	
심층 면담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와 원인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
		스포츠윤리교육 내용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교수자(강사)의 전문성
		스포츠윤리교육의 제도화(법정의무교육)
		스포츠윤리교육의 정책 지원
		스포츠윤리교육적 방향
		스포츠윤리 전문성 고안
		정책 제도적

활용해 녹취하였다.

심층면담은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자료와 선행연구(김동혁 외, 2021; 임다연, 임효성, 2022a; 임다연, 임효성, 2022b)를 토대로 구조화된 면담(Structured Interview)과 반 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한 명당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고,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질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주제분석방법(Thematic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방법은 자료로부터 주제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유용한 연구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방법은 5단계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텍스트와 친밀해지기 위해 녹취록 전체와 부분을 수차례 반복하며 읽고, 녹음 파일을 재차 듣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텍스트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료를 분석적·비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코멘트를 적거나, 밑줄을 긋는 작업을 하였다. 둘째, 코딩 작업을 실시하였고, 녹취록 전반에 걸쳐 있는 주요 개념의 두드러지는 결과 코드를 표면적인 내용으로 담아내었다. 셋째, 도출된 코드를 토대로 주제를 만들었다. 넷째, 도출된 주제가 같은 맥락을 지향하는지 살피고, 주제별로 변별력 있는지 검토하였다. 다섯째, 검토된 주제가 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주제 명칭을 다시 검토하였다. 여섯째, 각 주제를 명료하게 정리하여 학술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스포츠윤리학 박사 1인을 비롯한 질적연구 경험을 지닌 스포츠사회학 교수 2인 스포츠철학 교수 1인 등과 함께 주 2회의 세미나를 거쳐 분석된 자료를 검토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해 정보제공자의 의견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성원 간의 공유하여 재차 확인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결과 및 논의

1.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

1) 개인적 문제

(1) 교육의 피로감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스포츠윤리 센터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각 종목별 협회에서 대면 및 비대면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스포츠인권, 부정행위 예방교육, 청렴교육 등과 같이 스포츠윤리교육과 중복된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고충을 느끼고 있다 하였다. 전문가들의 답변에 따르면 현행 교육 자체가 지루하고, ‘재미없다’ 평이 많은 것이 교육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 입을 모았다.

“지도자나 선수들은 지도자로서, 선수로서 팀에 활동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로 교육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교육을 지루하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전문가E)

“교육이 대부분 재미없다는 평이 많아요 ... 스포츠 계도 말로만 중요하다 하는데, 정작 학습자들은 열심히 할 의지는 없는 상태로 피동적이게 되는 겁니다.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 자체가 경기력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재미없다는 평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재밌겠어요.”(전문가D)

전문가는 학습자가 스포츠윤리교육을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중복되는 교육 내용뿐 아니라, 교육 자체를 스포츠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더욱이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통해 학습자의 교육 참여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문가A와 D는 교육을 수강하는 선수들은 학습권 보장으로 인해 학업과 훈련이 빼곡히 짜여져 있어, 스포츠윤리교육을 수강하는 것이 선수의 훈련에

다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달리 말하면, 스포츠윤리교육이 윤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찰의 시간이라기보다 경기력 향상의 방해요소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 학습자들은 교육시간을 할애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김동혁 외(2021)는 교육 강사가 교육할 때 뒷자리에 앉은 학습자들은 엉덩이를 빼고, 눕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학습자가 교육을 수강할 때 마음가짐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을 드높일 수 없으며, 피로감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2) 스포츠 현장 적용의 고충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인들이 마주하는 윤리적인 문제의 상황들은 매우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스포츠윤리적 문제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판단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스포츠인의 내재적 윤리 인식이라 간주된다. 스포츠인의 윤리 인식은 무엇보다 스포츠윤리교육에 효과성에서 비롯된다. 일례로, Kobayashi(2016)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능력을 체득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을 도입하였고, 건강한 생활습관에 도움을 주는 것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절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의사결정 기술을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윤리교육은 학습자가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사고를 이끌어주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김동혁 외, 2021).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의 경우, 스포츠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에는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교육에서 만 배운 것들을 적용시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상황마다 순간적인 윤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순간적으로 대처하기에 현재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전문가A)

“체육지도자들의 윤리교육에서는 스포츠 인권, 스포츠폭력, 스포츠성폭력, 처벌사례 및 피해자 지원 등 각각의 정의와 사례, 원인, 지원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의 사례와 상황을 통해 자신의 윤리적 인식과 가치관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문제예요.”(전문가E)

매년 1시간이라는 일회성으로 스포츠인의 윤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교육 방식은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에 그치고 있으며(김동혁 외, 2021), 주입식 교육은 스포츠인의 공감을 이끌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일회성의 일방향적 교육은 순간적인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서 대처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윤리교육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면 자아 성찰 혹은, 교육에 대한 공감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충돌적인 상황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도덕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미국 미식축구리그 SFL은 가상현실을 활용하여 경기 상황 전반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하였고, 전반적인 모든 형태의 전략을 섭렵하고, 포지션별 시점을 전환하는 것 또한 가능해졌다(Brousell, 2015.08.10.). 이는 경기력 향상에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의사 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순간적인 윤리적 갈등에서도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스포츠윤리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단어의 개념적 정의가 아니라,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

(3) 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재

스포츠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스포츠계를 넘어 일반 사회로 확산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강구책으로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최유리, 2018). 그러나 대다수의 선행연구가 스포츠윤리교육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교육에 대한 실제적 효과성 검증이나 수요조

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스포츠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가 대두될수록 스포츠윤리교육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의 승리지상주의적 사고의 팽배해서 윤리문제와 상충하게 되면 승리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전문가C)

“교육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불필요성 인식이 팽배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교육해줬으면 좋겠는지 명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가 교육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죠.”(전문가D)

전문가들은 실제 현장에서 스포츠인들이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령, 전민수와 윤효준(2023)에 따르면 학생선수들에 대한 윤리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윤리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선수들이 약 3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계에서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스포츠인들이 인식하는 스포츠윤리교육의 중요성이 달리 작용된다.

스포츠는 승리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결과주의의 특성을 지녔으며,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스포츠 현장에서 윤리적 문제와 맞닥뜨릴 경우, 승리를 추구하는 스포츠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윤리를 지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윤리가 스포츠 현장에서의 방해요소로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스포츠인들은 교육 자체에 거부감이나 불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인들에게 스포츠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필요성 인지가 시급하다.

또한 전문가는 스포츠윤리교육을 선행하기 이전에 교육 대상자로부터 명확한 교육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효과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학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요구된다.

2) 조직·집단적 문제

(1) 교수자의 전문성 결여

스포츠윤리교육은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운영하는 스포츠윤리 전문강사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2017년에 실시한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은 은퇴선수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9시까지 3주 동안 110시간 진행되었고, 2기 전문강사 양성 과정인 2018년에는 3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윤리교육 강사를 양성하였다(김진희, 임다연, 박성주, 김선희, 2019). 이처럼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스포츠철학이나 스포츠윤리를 전공한 전공자 인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교수자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윤리 전문 교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강사가 없고, 늘릴 개선 의지조차 없죠. 스포츠윤리 전문가 집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전공자가 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육철학 전공자 중에서도 윤리학에 대한 제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한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연구자와 전문가 수가 정말 부족합니다. 스포츠지도사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전문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심각하게는 타 분야 교수, 학자들이 비아냥거림이 있을 정도죠. 문항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경험지식이나 보편적이지 못한 지식을 묻는 문항들도 그렇습니다.”(전문가C)

“스포츠윤리를 교육할 만한 적합한 교수자 수가 부족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스포츠철학이나 스포츠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잘 없으니까요.”(전문가B)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교수자의 전문성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가령,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에서 강사역량에 따라 교육효과가 달라진다고 하였다(최유리, 2018). 강사가 함양한 프로스포츠의 이해도, 스포츠윤리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열의, 학습자에 대한 이해 등이 교육만족도와 성과를 좌우하며, 강사의

전문성은 학습자의 행동 변화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최유리, 2018).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스포츠윤리교육 혹은 스포츠인권 교육을 전문 수준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Heerdt, 2022). 그 이유를 국외 체육학에서 찾을 수 있었다. 스포츠 관련한 윤리나 인권에 대한 언급이 스포츠 역사를 비롯해 스포츠 정책,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법률 등에서 찾아볼 수 없고, 체육학에서 윤리의식 증진에 대한 내용조차 없다고 하였다(Heerdt, 2023).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교육의 교수자 전문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스포츠윤리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적합한 교수자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해당 학문의 전공자가 없기 때문이라 의견을 내었다. 이 경향은 현재 스포츠윤리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높기에, 비전공자가 교수자로서 스포츠윤리교육 현장에 드러서게 되며,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전문가C는 스포츠철학 전공자 자체도 윤리학 제반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허다한데, 비전공자가 스포츠윤리교육을 교육하는 것은 더욱 전문성이 저조하며, 이는 스포츠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저조시키고, 더 나아가 교육의 가치까지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주(2019)는 스포츠윤리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데 스포츠윤리가 사회적 관심과 유행에만 치우침으로써 단순히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될 뿐,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 밝혔다. 스포츠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학문 분야로서 스포츠윤리의 이론적 논의는 다소 부족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교수자의 전문성 부족이 단순히 교수자 자체만이 아니라, 스포츠윤리의 학문에 대한 정체성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육 콘텐츠의 체계화 부족

교육 효과성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스포츠윤리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사고를 표출할 수 있도록 토론과 발표를 통해 능동적인 교육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최유리, 2018).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에 대해 교육 콘텐츠가 체계적이지 않고, 단일적이며 교육 내용 구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였다.

특히나 스포츠윤리센터가 필수가 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선수 인권 보호와 스포츠폭력예방이라는 미명 아래에 스포츠윤리교육보다 스포츠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같은 스포츠인권 교육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지고 있다.

“성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만, 학생선수 교육은 지속적인 교육이 어려워요. 단순히 규정과 처벌 내용만 교육해서 윤리교육의 효과성과 목적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하죠. 일방향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교육들은 선수들이 인식을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죠.”(전문가A)

“스포츠윤리교육 콘텐츠가 편향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급급할 뿐 대체로 부족한 실정이에요. 특히 스포츠윤리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아요.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이 일관성 있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문제는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인 덕성에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큰데 교육들은 개인의 일탈에 해당하는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전문가B)

전문가A는 단순히 규정과 처벌과 관련된 내용만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는 스포츠윤리교육이 추구하는 목적과 교육의 효과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스포츠협회에서 실시되는 스포츠윤리교육 유형별 교안을 살펴보면 폭력 강의교안을 비롯해, 음주운전 강의교안, 불법도박 강의교안, 승부조작 강의교안 등이 대부분 처벌과 법률에 의거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스포츠협회, 2023.05.01.). 다시 말해, 현 스포츠윤리교육은 부정행위방지에 관한 지식만을 축적하고 있고, 본래의 스포츠윤리교육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전민수, 윤효준, 2023).

스포츠윤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스포츠인으로부터 도덕적 자율성(moral autonomy)을 함양하는 데 있다(박성주, 2013). 그러나, 일부 교육은 편향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이 일관성이 없고, 교육 방법과 관련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난무하다. 더욱이 전문가B는 스포

츠 조직 내 구조적인 문제도 교육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개인 일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호주의 경우, 매년 2,500명 이상의 선수들에게 제공된 도핑 방지 교육 프로그램과 스포츠윤리 호주의 스포츠윤리교육프로그램이 있다. 스포츠윤리 호주는 호주 올림픽 위원회 및 호주 패럴림픽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기초과정, 종합과정, 고급과정, 전문과정으로 크게 분류하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Sport Integrity Australia, 2023). 스포츠윤리교육이 체계화를 이루어 전체 교육 과정이 수행됨으로써 단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체적 구성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교육이 되어야 하며, 현재보다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Heerdt, 2023).

(3) 특정 수단으로 활용

전문가들은 조직적 문제로 기관 성과의 수단을 통해 스포츠윤리교육이 활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육의 문제점을 집단적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즉, 기관은 교육 성과와 예산 확보 등의 실적위주의 행정 수단으로 스포츠윤리교육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강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스포츠인권 교육에 대해 대규모 강의를 보편화됨에 따라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김동혁 외, 2021). 현재 스포츠윤리교육은 대규모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되고 있다. 이에 당연한 결과로 학습자들은 고된 훈련에서 벗어나 낮잠을 청하는 등의 강의에 집중하기 힘든 모습을 엿볼 수 있다(김동혁 외, 2021).

“기관들은 예산 확보의 수단으로 교육을 이용하뿐이에요. 정작 교육과정 전반에 필요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나 연구는 뒷전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다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인들에게 의무화되지 않은 교육을 강제로 학습하려는 현상도 나타나요 ... 그런데 가장 아쉬운 건 기관들이 자신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하기를 원하거나 별도로 운영하고 싶어합니다. ... 교육의 효과

성을 높여야 하는 교육이어야 하는데, 기관의 성과를 위해 제작된 교안 다수가 아쉬움이 많습니다.”(전문가D)

“강사와 교육생의 상호작용이 부족해요. 토론과 피드백이 어려운 대형 강의는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스포츠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적 성찰이 증진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기관들은 교육 성과 때문에 대형 강의를 주로 선호하고 교육생의 수를 늘립니다.”(전문가B)

전문가D의 경우, 다수 기관들이 스포츠윤리교육을 운영하고 있지만, 본인의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한 기관이 스포츠윤리교육을 매수하여 교육 실적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부로부터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산으로 사료된다. 이로 인해 실적 향상을 위한 대형 강의를 선호하고,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커리큘럼이나, 교육 방법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며 성과를 위한 교육이 아닌, 기관 내 바람직한 스포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구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3) 사회·환경적 문제

(1) 교육의 강제성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8월에 1차 개정되었고, 2021년 2차로 개정되어 법정 의무교육이 이루어졌고, 2022년 체육지도자 재교육 과정이 시행됨으로써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로써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비롯해 체육지도자 재교육과정, 성폭력 및 폭력 예방교육 등 세 종류의 법정 의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정서, 2021.11.29.). 실제로, 202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 2항에 따르면 스포츠윤리교육은 인권, (성)폭력의 정의 및 유형,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조치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와 지도자, 심판 등 대면 교육 혹은 비대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국민

체육진흥법, 제30조의 2).

이처럼 정부가 스포츠윤리교육을 의무화시킨 데에는 그동안 발생했던 스포츠계의 부패와 인권침해 등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육계의 최선이다. 이제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해결책이자, 예방책으로 스포츠인들의 윤리 인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오히려 스포츠윤리교육이 강제성을 띤 것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었보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포츠윤리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죠. 선수들 대상으로 단순히 교육만 수강 완료하는 데 급급한데 강제성을 띤 교육이 과연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전문가A)

“체육지도자나 선수들은 팀에 지도자로 팀에 선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교육 이수증이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 스포츠윤리교육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중 하나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전문가E)

현재 스포츠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스포츠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학습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한다. 아무리 교육이 좋은 의도로 시행된다고 해도 강제성을 띤다면, 이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은 자율적인 마음이 아니므로 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 강제 정책의 역사는 때때로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Bester, 2015). 가령, 미국의 의무적 예방접종은 수동적인 저항에서 능동적인 저항으로 변화시켰고, 좋은 의도로 제시한 강제적인 정책은 역설적으로 저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Bester, 2015). 이처럼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스포츠윤리교육은 교육 대상자들에게 이수해야 하는 하나의 교육으로 간주되며, 이 같은 인식을 개선할 만한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윤리의 개념적 혼용

스포츠윤리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스포츠맨십, 도핑, 성차별, 승부조작, 페어플레이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어지고 있고(박성주, 2019), 논문 편수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스포츠윤리에 대한 개념적 논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 결과, 스포츠윤리학은 다른 학문과 비교하였을 때 독립적인 정합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학문적 발전도 더딘 상황이다(박성주, 2019).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인권도 마찬가지다. 이에 박성주(2022)는 스포츠인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스포츠인권 역시, 스포츠윤리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인권의 명확한 개념과 원리 등의 부재로 인해 각종 제도만 도입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용우, 오현택, 2015). 따라서 스포츠윤리의 정체성과 다소 부족한 시점에서 스포츠윤리와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스포츠인권과의 개념적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개발되는 교육 콘텐츠 대다수가 성폭력·폭력예방교육 인권과 관련된 교육으로 제작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라는 용어에 맞는 교육주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러 체육 단체에서는 스포츠윤리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어요 인권, 권익, 학습권 등과 많이 혼동하여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죠.”(전문가D)

전문가D는 스포츠윤리와 스포츠인권이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였다. 현재 성폭력·폭력 예방교육이 주로 제작되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인권이나, 스포츠윤리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다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체육 단체에서도 스포츠윤리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스포츠인권과 권익, 학습권, 스포츠윤리 등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국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Heerdt(2023)는 스포츠윤리 및 청렴 교육 혹은 스포츠법률 교육프로그램이 인권을 하위주제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국외에서도 인권 침해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윤리 및 청렴 교육이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할 있다. 전문가D도 마찬가지로, 스포츠윤리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립과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 같은 용어에 혼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계에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부족

체육 정책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경식, 2021)를 살펴보면, ‘스포츠윤리’가 정책 토픽으로 학교 폭력 예방, 스포츠지도자 교육 문제 및 개선, 스포츠현장의 폭력 및 성폭력 등과 같은 정책 연구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업, 폭력 등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반적인 체육정책을 다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스포츠윤리는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며, 체육계 하나의 정책적 범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필수가 되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만 실행될 뿐, 교육 교안을 개발하거나 연구할 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즉, 전문가들은 교육 개발과 인력 양성에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윤리교육은 재정적으로 지원받기에 다소 어려운 구조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대상에 예방적 차원으로 교육이 보급될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이 개발되고 인력이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대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다른 정부 부처나 산하단체에 배정되는 예산에 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배정된 교육 예산이 부족합니다.”(전문가D)

“현실적으로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합니다.”(전문가E)

“교육에 별도 예산 배정이 없습니다.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럴 돈이 없죠.”(전문가C)

이렇듯 스포츠윤리교육의 발전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다른 부처나 산하 단체에 배정되는 예산에 비해, 스포츠윤리교육 예산이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육부의 경우,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있으나, 윤리교육 관련한 예산은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김동혁 외, 2021). 또한 현장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스포츠인들에게도 윤리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예방적 차원

에서 교육이 보급되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스포츠윤리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한데, 현실적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만큼 여유가 없다. 따라서 스포츠윤리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성찰적 실천 교육

이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포츠윤리교육은 참여적, 활동적, 경험중심적 교육방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구정화, 2017; 손진희, 노자은, 2018; 양천수, 2012; 유병열, 임일렬, 2006). 그러나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은 대규모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주입식 교육, 일방향성 교육이라는 지적이 난무하다(김동혁 외, 2021). 교육의 특성상 스포츠현장에 대한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성찰하고 사고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동료 선수들과 토론하는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방법은 단순히 텍스트만 전달하는 데 급급했다. 특히나, 다수 인원의 학습자들을 토론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교육 프로그램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김동혁 외 2021). 이에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법을 타파하고,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성찰적 실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효과적인 윤리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성별이나 종목별 특성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종목씩 실제 현장 목소리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해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주로 강의식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보다는 소통식 교육이 효과적이예요. 활동형, 체험형 형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요.”(전문가D)

“강제교육이 아니라, 실제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실제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으로

로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윤리 교육이 실행되어야 해요.”(전문가A)

전문가들에 따르면 스포츠윤리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여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즉, 실제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전문가D에 따르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수의 종목별 특성에 맞추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선수를 비롯한 지도자, 심판, 프런트 직원 등 스포츠인의 도덕적 수준과 그 특성에 맞추어 알맞게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김동혁 외, 2021; 남제성, 2014; 전상완 외, 2023; 유병열, 임일렬, 2006). Cleret et al(2015)의 연구에 의하면 스포츠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에게 스포츠와 관련해 어떤 종류의 윤리 교육이 필요한지, 교수자는 직업교육을 적절한 교육방법을 통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도덕적 수준을 탐색하는 데 필요한 설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강의식 교육보다 학습자가 체험형 형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에서 실제 활용되는 교육적 사례나, 예시를 통해 학습자의 감정을 동요하는 것은 수동적 감정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자발적인 감정이나 공감을 고양하기는 쉽지 않다(임다연, 임효성, 2022a).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쉽지 체험하지 못하는 도덕적 딜레마를 과학기술로 하여금 체험하고 소통한다면, 실제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했을 때 바람직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가령,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홍현미와 장선영(2022)은 가상현실을 체험함으로써 예비교사가 학교폭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감수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예비교사의 인권감수성이 증진하였다. 이처럼 가상현실과 같은 과학기술적용은

현실에서 직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접함으로써 학습적 효과를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전상완 외, 2023).

전문가들은 스포츠윤리교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실천적 교육을 통하여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여 도덕적 자율성을 함양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실제 윤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윤리 교육을 위해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학습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의 개발이며, 이를 위해 실제 스포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식 및 교육 과정 체계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스포츠윤리학은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가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학문 분야로서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윤리의 개념이 혼용됨으로써 스포츠윤리의 개념적 정립과 더불어 교육 분야로서 학문적 지식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정재민, 서향리, 윤종성(2023)의 연구에서 현재 시·도 체육회 및 종목 단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지도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과거에 들었던 내용과 유사하거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스포츠윤리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정재민 외, 2023). 이에 연구참여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선수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상황에 놓일 때 미리 접한 윤리 경험이 필요합니다. 미리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유소년시절부터 윤리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B)

“스포츠윤리 교재 실태를 보더라도 지식 충족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교재가 없어요. 각 교재마다 주요

내용지식이 다르거나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려운 분야로 인식됩니다. 체계적인 스포츠윤리 지식체계를 접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러면 전문 교육 분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식의 진보가 더딜 수밖에 없죠.”(전문가C)

연구참여자B의 경우, 유소년시절부터 스포츠윤리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Lippi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유소년시절부터 신뢰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유소년부터 성인선수까지 윤리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윤리의식을 체득할 수 있으며, 현재 일회성 교육으로는 윤리의식을 체득하기 어렵다.

연구참여자C는 스포츠윤리학적 지식이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WADA는 최근 청소년, 운동선수 및 지원 인력이 도핑을 피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교육 도구 및 자료로 제안하였다(Lippi et al., 2008). 윤리교육 커리큘럼의 체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문적 스포츠윤리의 전문성을 제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의 논쟁이 되고 있는 특수 주제의 연구만 다루는 것보다 스포츠윤리학적 이론과 개념적 연구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도핑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다면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스포츠 당국은 선수에 대한 윤리교육과 지침이 최고의 해결 방안이라 하였다(Lippi et al., 2008). 또한 윤리교육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스포츠윤리교육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3) 전공 교수자 확대

앞서 제시한 것처럼 교수자의 전문성 부족한 이유를 스포츠윤리학의 전문성 부재와 스포츠윤리 전공자의 부족의 문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 교육의 전문성이 부족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내용과 교육강사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국가 차원에서 인증하는 자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한 단체가 강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죠.”(전문가D)

기존 실시되는 강사 선발은 기관에 의해 선발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전문성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스포츠 관련 종사자로 추천을 통해 강사 선발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김동혁 외, 2021). 이를 통해 윤리교육의 강사 선발이 미흡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스포츠윤리 강사 선발 기준을 살펴보면, “시도 및 경기단체 엘리트 선수·지도자, 체육학과 교수, 전문교육 상담자, 시도체육회 및 교육청 담당자, 경기단체 담당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대한체육회, 2014). 대한체육회에서 명시한 강사 선발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라 판단되며, 강사 역량을 평가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동혁 외(2021)는 관련 전공 지식과 역량을 기준으로 교육 강사를 선발하고, 이후 별도의 양성과정을 진행하여 전문성이 담보된 강사로 윤리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전문가D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증하는 자격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교수자의 전문성을 가중시키고, 스포츠윤리교육 전문가를 양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 강사의 전문성 부족에 대해 교육 자체의 수요가 많으나, 그 반면에 전공자가 부족하여 교수자가 부족한 실정이라 하였다. 특히 전문가B는 강사의 인력풀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표명하였다. 김동혁 외(2021)는 강사선발 과정에서 ‘양성과정-위촉-보수과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강사 관리가 필요하다.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무엇보다 스포츠의 윤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스포츠윤리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과 행정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김동혁 외, 2021;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 2013). 그러나 2019년 스포츠윤리 관련 배정받은 예산은 9억 1,400만 원, 17개 지방단위기관에 배정된 예산은 평균 1,700만원에 불과했다(김창금, 2019.01.13.). 연구참여자들 또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처럼 교육체계도와 중장기 교육발전 계획에 대한 전담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관련 법령 재개정 등이 끊임없이 수반되어야 합니다.”(전문가D)

“강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스포츠계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합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죠.”(전문가B)

“정부 기관과 스포츠 단체에서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의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스포츠 규정을 재정비해야죠.”(전문가A)

전문가들은 현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문가D는 교육부나 여성가족부와 같이 교육체계도와 교육발전 계획을 위해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관련 법령이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문가A는 정부 기관과 스포츠 단체에서 직업윤리를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이를 반영하여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UN)과 세계인권선언(UDHR)에 따르면, 증진(promote)의 책무는 인권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인적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스포츠윤리교육에 필요한 예산과 지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와 그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자료 분석을 통해 개인적 문제, 조직·집단적 문제, 사회·환경적 문제로 분류하여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스포츠윤리교육의 문제점으로 첫째 개인적 문제는 ‘교육의 피로감’, ‘스포츠 현장 적용의 고충’, ‘교육의 필요성 인식 부재’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집단적 문제는 ‘교수자의 전문성 결여’, ‘교육 콘텐츠의 체계화 부족’, ‘기관의 성과 수단’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환경적 문제는 ‘교육의 강제성’, ‘스포츠윤리의 개념적 혼용’,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행 스포츠윤리교육 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맞춤·소통·체험 교육과 성찰적 실천 교육’, ‘지식 및 교육과정 체계화’, ‘전공 교수자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제안할 수 있었다.

오늘날 스포츠윤리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따라 현장에서 스포츠윤리 의식의 필요성이 시급해졌고, 이로 인해 교육이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학문으로서 스포츠윤리의 근본적인 개념적 확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제도 도입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외부적 측면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포츠윤리학의 이론적 정립이 요구된다. 또한 스포츠윤리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공자가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전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국가인증 자격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림과 동시에 소규모 교육을 통해 맞춤·소통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스포츠계 비윤리적 문제를 교육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스포츠윤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제도적 지원 아래, 이해 관계자 모두가 현실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정화(2017).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8(1), 5-23.
-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 김경식(2021). 주제어 연결망 및 토폭모델링을 활용한 한국체육정책학의 지적 구조 규명. **한국체육학회지**, 60(6), 71-88.
- 김동혁, 정은, 류태호(2021). 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 14(1), 109-140.
- 김우중(2023.05.31.). **WBC 대표팀 음주 논란, 구단들 ‘KBO 조치 먼저 지켜보고 따르겠다’ KB O “문제시 상벌위 개최”(종합)**.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3016300070969>
- 김진희, 임다연, 박성주, 김선희(2019). 스포츠윤리 강사 양성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강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5(4), 603-621.
- 김창금(2019.01.13.). **선수육성에 연 1700억 쓰는 체육회, 인권 예산은 고작 9억**.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78220.html
- 남재성(2014). 경찰공무원의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경찰 인권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경찰연구**, 13(2), 55-78.
- 대한체육회(2014). 『2014년 스포츠인권향상 사업결과보고서』. 대한체육회.
- 박성주(2013). 스포츠윤리 교육의 내용과 방법. **한국체육학회지**, 52(5), 87-94.

- 박성주(2019). 스포츠윤리학의 역사와 과제, 그리고 전망. **체육과학연구**, 30(2), 199-212.
- 박성주(2022). 스포츠인권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학회지**, 61(4), 1-12.
- 손진희, 노자은(2018). 청소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법과인권교육 연구**, 11(1), 125-150.
- 양천수(2012).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동아법학**, 54, 149-180.
- 유병열, 임일렬(2006). 초등 도덕과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교육내용과 지도 방법 개선으로-. **한국초등교육**, 17(1), 1-33.
- 임다연, 임효성(2022a). 스포츠윤리 강사의 비대면 교육경험과 인식: 디지털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5), 329-341.
- 임다연, 임효성(2022b). 엘리트스포츠 영역의 법정 의무교육 현황 및 개선방향: 스포츠지도자의 학습피로를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40(3), 167-174.
- 전민수, 윤효준(2023). 학생선수들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스포츠윤리 교육 알림 지표 개발. **스포츠사이언스** 41(1), 265-270.
- 전상완, 김미숙, 박한솔(2023). 정서적 스포츠 폭력의 문제 고찰 및 스포츠윤리 교육의 정책적 제언.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8(1), 139-153.
- 정재민, 서향리, 윤종성(2023). 전문스포츠지도자의 승리를 위한 윤리적 갈등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4(1), 1847-1858.
- 정용우, 오현택(2015). 스포츠 인권의 개념에 대한 기초 연구. **스포츠인류학연구**, 10(1), 27-46.
- 최유리(2018). 스포츠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디지털융복합연구**, 16(8), 381-391.
- 최정서(2021.11.29.).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교육 확대 추진**. 스포츠한국. <https://www.dailysportshankoo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731>
- 프로스포츠협회(2023.05.01.). **프로스포츠 정보광장 홈페이지**. <http://data.prosports.or.kr/board/m06/sub/main>
- 허종렬, 나달수, 이대성(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 연구**, 6(1), 171-202.
- 홍현미, 장선영(2022). 학교폭력 가상현실 체험이 예비교사들의 인권감수성과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교육연구**, 39(1), 167-193.
-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Bloomsbury Publishing.
- BBC(2019.04.26.). Larry Nassar: Aly Raisman criticises Li Li Leung's comments on abuse case. BBC. <https://www.bbc.com/sport/gymnastics/48062902>
- Bester, J. C. (2015). Vaccine refusal and trust: the trouble with coercion and education and suggestions for a cure. *Journal of Bioethical Inquiry*, 12, 555-559.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Cleret, L., McNamee, M., & Page, S. (2015). 'Sports integrity' needs sports ethics (and sports philosophers and sports ethicists too). *Sport, Ethics and Philosophy*, 9(1), 1-5.
- Constantin, P. N. (2019). Romanian Sport Integrity Problems and Whistleblowing in 2017-2018. *Research and Science Today*, (1), 133-142.
- Gardiner, S. (2018). Perspectives on ethics and integrity in football. In *Routledge handbook of football business and management* (pp. 376-387). Routledge.
- Hall, K., Masters, A., & Ordway, C. (2021). Sport Integrity and Corruption: Best Practice Australian and International Policy & Program Delivery Approaches. Available at *SSRN 3945196*.
- Heerdt, D. (2023). Addressing human rights abuses

- at mega-sporting events—A shared responsibility in theory and practice. *Frontiers in Sports and Active Living*, 4, 1067088.
- Kobayashi, M., Takakura, M., Asikin, Y., Ganaha, Y., Fujita, T., Yogi, Y., ... & Sasazawa, Y. (2016).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thinking and decision-making in exercise and lifestyle in adolescents: Minoru Kobayashi.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6 (suppl_1).
- Lauren Brousell(2015.08.10.). Training in an immersive environment... Desire to adopt VR solution blowing in the NFL CIO. <https://www.ciokorea.com/interview/26189#csidx4de7146af687cf897f4bb9cd2bd52db>
- Lippi, G., Franchini, M., & Guidi, G. C. (2008). Doping in competition or doping in sport?. *British medical bulletin*, 86(1), 95-107.
- Pavot, D., & Faiss, R. (2023). Where is the frontier between integrity in sport and anti-doping if it exists?. *Frontiers in Sports and Active Living*, 5, 1158055.
- Sport Integrity Australia(2023). Sport Integrity Australia home page <https://www.sportintegrity.gov.au>
- Swiss Sport Integrity(2023). Swiss Sport Integrity home page <https://www.sportintegrity.ch/en>
- Spencer, A. F. (1996). Ethics in physical and sport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67(7), 37-39.
- Szkiela, J. (2021). What does Sports Integrity Australia and enhanced anti-doping capabilities mean for athletes and the privilege of self-incrimination?. *Canberra Law Review*, 18(1), 115-148.
- Tak, M., Sam, M. P., & Choi, C. H. (2020). Too much at stake to uphold sport integrity? High-performance athletes' involvement in match-fixing. *Crime, Law and Social Change*, 74, 27-44.